

(特)(許)(戰)(略)(落)(穩)

## 物許契約의 重要性

—全建設費의 20%까지도—

우리企業들의 特許戰略의 成敗는 特許管理의 好否가 左右할 段階에 있다고 본다면 그 특허관리의 가장 重要한 局面은 技術導入時의 特許實施契約이라 할 만하다.

새롭고 顧하는 기술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은 且置하고 特허를 도입하려 할 때에 중요 한 것은 特許實施料의 測定이다. 그러나 特許料의 측정이야 말로 研究發明에 뭇지 않게 힘 드는 事案이라 하겠다.

특허실시료의 算定이 곧 發明의 評價인 反面에 이 實施契約으로 그 발명이 商品의 生產販賣에 어느반큼 寄與하느냐 判斷基準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술을 도입하려면 실시료는 支拂해야 하므로 通例의으로는

- ①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이나의 與否.
- ② 發明이 그대로 실시할 수 있겠는가.
- ③ 地域條件등의 契約條件이 있는가.
- ④ 特許權에 노우하우가 包含되는가.
- ⑤ 발명이 지닌 技術的 經濟的效果의 大小 등을 嚴密히 따져야 한다.

이러한 原則아래 실시료는 基本額에다가 實施料率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常例이며 기본액에는

- ① 販賣單價와 生產數量의 值
- ② 판매 단가와 販賣數量의 值
- ③ 발명에 의해 얻은 價值金額과 利用件數의 值
- ④ 발명에 의해 얻은 가치금액과 판매수량의 值
- ⑤ 발명에 의해 얻은 가치금액과 생산수량의 值
- ⑥ 製品販賣에 의해 얻은 利益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서 대체로 ①과 ②의 경우를 많이 適用하는 傾向이다.

따라서 그 기본액에 실시료를 곱하여 실시료를 결정하게 된다. 즉 基本率×利用率×增減率×開拓率= 實施料率이 된다.

다시 말해서 기본율, 이용율, 증감율 및 개척율의 值로서 실시료율을 정하게 되며 기본율은 기본액을 판매가격으로 하였을 때로서 대개의 경우 4%, 3%, 2%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용율이란 그 販賣製品에 占有하는 發明利用率을 말하며 그 제품이 全面的으로 그 발명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면 100%이다. 部分的使用이면 그 以下가 된다.

증감율은 그 발명의 公益性이 강할 경우나 다른 競爭發明이 있을 경우 또는 그 제품의 값이 급히 높을 경우에 따라서 증감한다.

개척율은 그 발명을 實際로 商品化하기 위하여나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配慮하는 팩터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實施料率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다른 通例의인 方法을 採擇하는 수도 있다.

機械, 電機, 化學分野가 各己의 요율에 대한 통례가 있듯이 一率의이 아닐수가 있다. 특히 이들 분야는 높은 율이 적용되기도 하는데 5%가 平均值라는 것을 先發國들이 愛用하여 왔다고 볼수 있다.

美國의 경우 電子分野는 판매액의 2~4%가 통례이나 중요한 발명의 경우는 8%까지도 적용한다. 화학분야는 단순한 特허의 실시료는 4~8%, 간단한 노우하우를 포함하면 10% 内外, 플랜트建設로부터 모든 노우하우를 포함한 실시료는 全建設費의 10~20%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이다.